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315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임종득 · 강선영 · 유용원  
이종배 · 강승규 · 추경호  
권영진 · 박수민 · 윤영석  
박형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나 혈액보유량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찾았더라도 의료기관 내 보유 혈액이 부족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의2제5항 신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제16조(재정 지원) ① -----<br>-----<br>-----<br>-----<br>-----, 이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
| ① ~ ④ (생략)                                                                           | ① ~ ④ (현행과 같음)                                                                                                                                                            |
| <신설>                                                                                 | 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
|--|----------------------------------------------------------------------|
|  | <u>따라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u><br><u>을 확보하여 유지·관리하도록</u><br><u>노력하여야 한다.</u> |
|--|----------------------------------------------------------------------|